

9. 國土利用管理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789號 1995. 10. 19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7호중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로”를 “임야도등본으로”, “지적”을 “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인 농지”를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로 한다.

제5조 제6호중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내지 바목”을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나목 내지 자목”으로 한다.

제7조 제1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농어촌산업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외 2차·3차 산업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마. 시설용지지구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기타 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제8조중 “축척 1천 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또는”을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이나”로, “지적”을 “지번·지목등”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공고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지역의 면적과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2.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3. 기타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제11조 제5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5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되, 동
호가목중 “농공단지등 관계법령에서”를
“관계법령에서”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
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
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어촌산업지구의 경우

가. 농공단지등 관계법령에서 개발기
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
획,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
방향 및 입지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도로·상하수도·환경오염
방지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건축물의
배치계획 또는 설치계획을 포함한
다)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다. 주변 연결도로의 확충계획등 기타
농어촌산업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제6항 제1호중 “제2조 제1항 제1
호 나목”을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다
목”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
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
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
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
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
의 공작물.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
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
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
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
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
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

타의 공작물

-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
-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 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13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농어촌산업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 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및 골재채취법 시설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및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

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시설

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3.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농지조성·초지조성·영립행위·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치된 공장(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포함하

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기존의 공장으로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경우

나. 199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 제곱미터이하의 증설인 경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3호중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로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제21조 제1항 제3호중 “축척 1천 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를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으로, “지적”을 “면적”으로, “절대농지·상대농지”를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한다.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명
2. 위치
3. 용도지역
4.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협의 또는 승인연월일
6. 협의 또는 승인한 입지의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지체없이 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송부받은 관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규제구역”을 “허가구역”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한

다.

제30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구부와 농지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1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제44조 제3호중 “축척 1천 200분의 1이상의 지적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를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으로 한다.

제45조의2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이를 기준으로 한 개별 필지의 토지가격을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내무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전산정보자료,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종합하여 토지종합전산정보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종합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를 제1호의 2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중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계획면적 범위안에서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간의 계획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토지수급계획의 변경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사목 내지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아.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 또는 설치한 지역·지구·구획등이 해제되어 당해 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자. 제6호 및 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를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제58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7호중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를 “시·군·구”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 제1호의2”로 한다.

- 6. 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용도지구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도시지역의 시설 용지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영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농어촌산업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준도시지역의 용도지구에 농어촌산업지구를 추가하고, 도지구는 농공단지로 조성하거나 2차·3차산업시설의 입지로 개발하도록 함(영 제7조 제1호 및 제11조 제5항).
- 나. 시장·군수가 준도시지역의 용도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경우 그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 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중 환경오염도가 낮은 자동차정비공장·골재채취시설 등을 준농림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라. 준농림지역안에서는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시설자동화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 제1항 제3호).
- 마. 준농림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함(영 제14조 제1항 제4호).

〈법제처 제공〉